

문서관리번호	GLVQS-A00117-03Q-12
최종 수정일	2023.09.12
문서 관리자	정책지원/CSR 팀

---

## 현대글로벌비스 기부 및 후원 정책 (Charitable contributions & sponsorship Policy)

---

2023. 9.

2019.07 제정  
2020.07 1차 개정  
2023.09 2차 개정

## I. 기부 및 후원 운영 방안

1. 현대글로벌비스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선기부 및 후원을 할 수 있다.
  - 1)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여야 한다.
  - 2) 적절하지 않은 사업상 이득 취득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.
  - 3) 적법하게 설립된 자선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며, 기부는 자선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.
2. 기부 및 후원은 정식 권한을 가진 전결권자의 승인 없이 제공될 수 없다.
3. 어떠한 직원도 본인 명의가 아닌 회사 직원의 신분으로는 정당, 정계 진출자 혹은 후보자에게 금전적 지불이나 기타 기부금을 제공할 수 없다.
4. 기부나 후원은 경매, 입찰, 계약 갱신 혹은 향후 사업 관계와 연관되어 이루어지거나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. 또한 회사는 해당 조직 혹은 계열사(연관된 당사자들)로부터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자선 기부 또는 후원 계약을 하지 않는다.
5. 사회공헌협의체
  - 전사 사회공헌 유관 조직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되며, 정책지원/CSR팀에게 신규/기존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, 협의체에서 협의된 안건을 각 조직내 전파하여 사회공헌 사업의 운영에 협력한다.

## II. 의무 사항

1. 기부나 후원이 뇌물방지 및 부패방지 정책과 같은 윤리정책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.
2. 모든 기부와 후원은 전결권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.
3. 모든 직원들은 정책을 읽고 이해하며 준수할 책임이 있다. 이 정책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.
4. 위의 정책 위반 시, 직원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해고될 수도 있다.
5. 이 정책은 회사의 뇌물 방지 및 부패 방지 정책, 기증, 초대 및 접대 정책, 이해관계 충돌 정책, 구매 정책 및 윤리 강령과 연관되어 관리된다.

### III. 외부 후원요청 대응

- 정부/지자체/공공기관/시민단체/지역사회 등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현재 회사가 기획/운영 중이 아닌 건에 대한 단순 후원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존재
- 외부 기관의 사업제안, 후원요청 등에 대해 타당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여 회사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여야 한다.